요금 감면제도 안내

셋째자녀이상 출산가정

울산광역시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저출산 장려시책으로 셋째자녀이상 출산가정에 월 사용량 15m³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 시행합니다.

ì 시행기간 │ 2010. 7. 1 ~ 2014. 12. 31

감면대상은 누구인가요?

- 2010. 7. 1일 00시 이후 출생한 셋째자녀이상 가정으로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감면 신청한 세대
- 2010. 7. 1일 00시 이후 출생한 셋째자녀이상 가정이 타 시·도에서 울산광역시로 전입하여 감면 신청한 세대

감면요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?

- 대상자 세대당 월사용량 15㎡에 해당하는 요금(상·하수도·물이용부담금 포함)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. (단위: 원)

동지역(현 요금요율)				읍 · 면지역(현 요금요율)			
계	상수도	하수도	물이용부담금	계	상수도	하수도	물이용부담금
13,630	8,400	4,540	690	12,490	7,800	4,000	690

※ 평균 15m³산정기준 : '09년 가정용 사용량 중 5인 가정의 월평균사용량(30m³)의 50%

□ 신청방법

- 신청기관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 또는 상수도지역사업소

- 신 청 인 : 주민등록표 세대원 중 1인

- 구비서류

• 셋째자녀이상 출산가정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1부

• 가족관계증명서 1부(주민등록표에 세자녀가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)

🧃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시 관내 이사하실 경우 기존 주소지 해당사업소에 전입 주소를 전화로 변경하여 주시면 전입지 사업소에서 감면을 받게 됩니다.

문 의

■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 ☎ 229-5521~5525

■ 상수도 중부사업소

298-3020

■ 상수도 남부사업소

229-5691~5695

■ 상수도 동부사업소

☎ 229-5710

■ 상수도 북부사업소

229-5740

■ 상수도 울주사업소

☎ 229-5781~5789

